

#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중 효과 논증\*

박준식\*\*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이중 효과 논증의 개요
- III. 해석적 논란의 배경
- IV. 해석적 쟁점: 의도, 비례, 허용
- V. 나가며

## [국문 요약]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 II-II, q.64, a.7에서 이른바 이중 효과 원칙으로 알려진 논변을 제시하고 있다. 정당방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개소는 이중 효과 원칙을 명확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최초의 사료로 알려져 있으나, 정작 이 개소의 의미 자체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그런가 하면 이 개소로부터 비롯한 다양한 버전의 이중 효과 원칙은 윤리 신학적 논의만이 아니라 법학적 논의, 생명윤리적 논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고의 틀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한 고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위 개소의 해석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 중에서 비교적 견해 대립이 뚜렷한 지점들을 찾아 정리하고, 어떠한 해석이 토마스 아퀴나스 자신의 논지를 보다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글에서 이와 같은 견해 대립의 지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첫째, “의도”의 개념에 대한 이해. 둘째, “목적에 대한 비례”의 의미에 대한 이해. 셋째, 자기 방어적

\* 이 논문은 2011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bookofchange@daum.net)

살인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한 이해 등이다.

“의도”의 개념에 대한 견해 대립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심리과정론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으며, “목적에 대한 비례”의 의미에 대한 견해 대립은 특히 “비례주의”에 대한 찬반 논의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자기방어적 살인이 “허용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한 견해 대립은 오늘날의 도그마틱적 논의와 관련이 있다.

위와 같은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이 글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 자신의 생각과, 이후 신-스콜라주의적 해석론, 그리고 현대적인 “비례주의” 해석론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각에서 위 개소를 이해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있다.

[주제어] 토마스 아퀴나스, 이중 효과 논증, 의도, 선택, 목적에 대한 비례, 정당방위, 비례적 근거

## I. 들어가며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Summa Theologiae*)><sup>1)</sup> 제2부 제2편(*Secunda Secundae*)에서 이른바 이중 효과 논증(double effect reasoning)을 전개하고 있다. 이중 효과 원리(principle of double effect)<sup>2)</sup>라는 명칭으로 더 널리 알려진 이 논증은 오늘날 대체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물음에 답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어떤

1) 이하 <신학대전> 또는 S.T.로 줄여 쓰기로 한다. <신학대전>의 영문 번역으로는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The Summa Theologica of St. Thomas Aquinas* (New York: Benziger Bros., 1947)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Joseph T. Mangan, Thomas A. Cavanaugh, Christopher Kaczor 등의 번역을 아울러 참조하였다. 참고로 말하자면 위의 <신학대전>의 라틴어 원문과 영문 번역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예컨대 <http://www.corpusthomicum.org/> 또는 <http://josephkenny.joyeurs.com/> 등의 사이트는 <신학대전>의 라틴어 원문 또는 영문 번역을 토마스 아퀴나스의 다른 저술들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2) 논자에 따라서는 이중 효과 교설(doctrine of double effect)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Warren S. Quinn, “Actions, Intentions, and Consequences: The Doctrine of Double Effect”, *Philosophy & Public Affairs* 18-4 (1989), pp.334-51; John Finnis, *Intention & Identity Collected Essays: Volume I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153; Alison McIntyre, “Doctrine of Double Effect”,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Fall 2009 Edition), E.N. Zalta (ed.), URL = <<http://plato.stanford.edu/archives/fall2009/entries/double-effect/>> 등을 참조.

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나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해악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해악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선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 하에서 그러한가? 그리고 이들 물음에 대한 답으로서 이중 효과 논증은 통상 다음과 같은 정식화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다음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될 경우 행위자는 선한 효과와 해악적 효과를 산출할 것으로 자신이 예견한(*foresees*) 바의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1) 행위 그 자체는 그 (객관적) 목적의 면에서 보아 선한 것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것이어야 한다. 2) 해악적 효과가 아니라 선한 효과가 의도되었어야(*be intended*) 한다. 3) 선한 효과는 해악적 효과를 수단으로 하여(*by means*) 산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해악적 효과를 허용해야 할 비례적으로 중한 이유(*a proportionately grave reason*)가 있어야 한다.<sup>3)</sup>

이중 효과 논증은 비단 윤리 신학의 영역만이 아니라 법학이나 생명윤리학의 영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형사법상의 정당화 사유 및 구성요건적 결과의 귀속에 관한 판단 문제, 혹은 공범의 처벌 범위에 대한 판단 문제,<sup>4)</sup> 안락사 또는 낙태 등과 같은 생명윤리적 주제에 있어서 허용가능성에 대한 판단 문제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광범위한 활용도만큼이나 논증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견해 대립의 폭도 넓다. 이 글에서 상세하게 다루기는 곤란하지만 위에 제시된 정식화의 용어를 빌어 간단히 언급하자면, 행위의 실천적 가치를 행위자의 내적 의도

3) Joseph T. Mangan, "An Historical Analysis of 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Theological Studies* 10 (1949), p.43. 참고로 *The Catholic Encyclopedia*는 Mangan의 정식화와 다소 상이한 표현을 사용한 정식화를 제공하고 있으나 의미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Alison McIntyre, *op. cit.*, sec.1 참조.

4) 이른바 형상적 협력(*formal cooperation*)과 질료적 협력(*material cooperation*)의 구별에 관한 논의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Joseph Delany, "Accomplice", *The Catholic Encyclopedia: Vol. 1* (New York: Robert Appleton Company, 1907), URL = <<http://www.newadvent.org/cathen/01100a.htm>>을 참조.

(intention)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결과에 따라 판단하고자 하는 입장이나 반대로 이를 전적으로 행위자의 내적 의도에 따라 판단하고자 하는 입장,<sup>5)</sup> 해악적 효과를 수단(means)으로 하여 선한 효과를 산출하는 경우와 해악적 효과가 선한 효과를 산출하는 와중에 단지 예견되었을(foreseen) 뿐인 경우를 구별하는 것이 실천적으로는 무의미하다는 입장<sup>6)</sup> 등을 취하게 되면 이중 효과 논증의 타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중 효과 논증의 타당성을 의심케 하는 직관적 반례<sup>7)</sup>를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와 동일한 평가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중 효과 논증의 정식화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지만,<sup>8)</sup> 그러한 시도들은 필연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하나의 문제를 환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 문제는 바로 애초에 이중 효과 논증의 정식화로 제시된 내용이 토마스 아퀴나스 자신의 논의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이 점으로 인해 비로소 기존의 정식화를 수정하는 어떠한 작업도 곧바로 역사적 전거와의 단절을 의미하게 된다는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역으로 새로운 정식화의 의의를 확정할 수 있으려면, 즉 기존의 정식화보다 역사적 전거의 본래 문맥에 더 근접한 것인지 혹은 그 반대인지를 분명히 하려면, 결국 토마스 아퀴나스 자신의 논의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이 글은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이중 효과 논증의 역사적 전거로

- 5) 이들 입장에 대해서는 Ioannes Paulus PP. II, *Veritatis Splendor* (Vatican: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93), 72항 참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encyclical)인 *Veritatis Splendor*(『진리의 광채』)의 영문판과 한국어판은 각각 바티칸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영문판의 위치는 [http://www.vatican.va/edocs/ENG0222/\\_INDEX.HTM](http://www.vatican.va/edocs/ENG0222/_INDEX.HTM)이며, 한글판의 위치는 [http://www.cbck.or.kr/book/book\\_list5.asp?p\\_code=k5150&seq=400103&page=8&KPope=&KBunryu=&key=&keyword#](http://www.cbck.or.kr/book/book_list5.asp?p_code=k5150&seq=400103&page=8&KPope=&KBunryu=&key=&keyword#)이다.
- 6)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내의 연구로는 Um Sung-Woo, “Intending as a Means and Foreseeing with Certainty”, 『철학사상』 제34권(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009), 279-303면.
- 7) 구체적인 반례들에 대해서는 Alison McIntyre, *op. cit.*, sec.3 참조.
- 8) 대표적인 학자로는 Peter Knauer, Warren S. Quinn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서 토마스 아퀴나스 자신의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 내딛는 첫걸음에 해당한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겠지만, 우선은 그를 둘러싼 해석적 논란의 쟁점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정리하는 작업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고, 이 글은 바로 그러한 필요의 충족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후속적 연구에서는 이중 효과 논증에 대한 이해의 역사적 변천 과정이나 각각의 이해에 대한 철학적 분석과 평가, 그리고 법학 및 생명윤리학 영역에서의 적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에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중 효과 논증을 보여주고 있는 개소를 살펴봄으로써 이 주제에 관한 토마스 아퀴나스 자신의 진술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당해 개소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에 관하여 그러한 의문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검토한 뒤,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쟁점 사항들을 둘러싼 해석적 논쟁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 II. 이중 효과 논증의 개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 제2부 제2편에서 정당방위(self-defense)의 상황에서 공격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과연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물은 뒤,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다소 긴 문장이라 할 수 있지만 관련 개소가 이중 효과 논증에 대한 표준적 전거(*locus classicus*) 이면서 동시에 이 글의 핵심적 논의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생략 없이 전체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그 어떤 것도 어느 행위가 두 개의 효과, 즉 하나의 의도된 효과와 다른 하나의 의도치 않은 효과를 가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여기서 도덕적 행위는 의도치 않은 바가 아니라 의도된 바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 결정되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

자가 우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방위 행위도 두 개의 효과, 즉 자신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효과와 공격자를 죽게 하는 효과를 지닐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는 행위자의 의도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는 한 금지되지 않는다. 무엇이든지 가능한 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느 행위가 선한 의도에서 비롯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일 목적에 대한 비례를 벗어난다면, 금지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만일 누군가가 방위 행위를 하는 와중에 필요 이상의 폭력을 사용한다면 그 행위는 금지될 것이며, 반대로 만일 그가 침해를 적절한 선에서 물리친다면 그의 방어는 허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범학자들에 의한 때 폭력을 폭력으로 물리치는 것은 비난의 여지없는 방어의 한계를 넘지 않는 한 허용되기 때문이다. 타인을 죽이지 않기 위하여 적절한 선의 방위 행위도 삼가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타인의 생명에 앞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공직자가 공동선을 위해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에, 적과 싸우는 군인의 경우나 강도들과 싸우는 범집행자의 경우처럼 공적인 권위를 지니는 자가 공동선에 입각하여 방위 행위를 하면서 타인을 죽이고자 의도할 때를 제외하고는, 방위 행위를 하면서 타인을 죽이고자 의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공직자의 경우에도 사적인 원한에 이끌려 그렇게 했다면 죄를 범한 것일 따름이다.<sup>9)</sup>

이 개소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직접 논의하고 있는 바와 앞에서 언급한 통상적인 이중 효과 논증의 정식화를 비교해 보면 우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첫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중 효과 논증을 다양한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정식화된 논증의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기보다는 정당 방위라는 특정한 실천적 문제에 대한 숙고의 결과를 기술하고 있다. 둘째, 토마스 아퀴나스는 방위 행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선한 효과가 공격자를 죽게 하는 해악적 효과를 수단으로 하여 산출된 것이 아니

---

9) *S.T.*, II-II, q.64, a.7

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첫 번째 사실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형태의 이중 효과 논증의 정식화가 Jean P. Gury의 *Compendium Theologiae Moralis* (1850)에 이르러 확립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sup>10)</sup> 학설들에 따르면 토마스 아퀴나스로부터 Jean P. Gury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중 효과 논증은 적용 범위의 확장과 원리적 독자성의 확보라는 두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우선 토마스 아퀴나스가 보여주고 있는 이중 효과 논증은 자기 방어적 살인이라는 특정한 실천적 문제의 합리적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야말로 하나의 논증에 불과한 것이라면, 16-7 세기의 만기 스콜라 학파를 거치면서 Jean P. Gury에 의해 정식화된 이중 효과 논증은 모든 윤리적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리의 표현으로 제시되고 있다.<sup>11)</sup> 또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중 효과 논증은 <신학대전> 제2부 제1편 (*Prima Secundae*)에서 밝히고 있는 인간 행위의 선악 판단에 대한 원리를 자기 방어적 살인이라는 문제 사례에 적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Jean P. Gury에 의해 정식화된 이중 효과 논증은 선제하는 어떤 원리를 사례 해결의 과정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하나의 독자적인 원리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서, 다시 말해 이중 효과 원리로서 등장하고 있다.<sup>12)</sup>

두 번째 사실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행위가 갖는 선한 효과와 해악적 효과 사이에 목적-수단의 관계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Thomas Cajetan의 *Commentarium in Summa Theologiae* (1540)를 통해 언급된 후,<sup>13)</sup> Jean P. Gury의 저술 속에서 선한 효과가 원인 행위로부터 직접 산출되어야 하며 해악적 효과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산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sup>14)</sup> 토마스 아퀴나스 자신은 어디까지나 “방위 행위를 하

10) Joseph T. Mangan, *op. cit.*, p.59; Christopher Kaczor, “Double-Effect Reasoning from Jean Pierre Gury to Peter Knauer”, *Theological Studies* 59 (1998), p.300.

11) Joseph T. Mangan, *op. cit.*, pp.52-61 참조.

12) Christopher Kaczor, *op. cit.*, pp.299-308 참조.

13) Joseph T. Mangan, *op. cit.*, p.52.

면서 타인을 죽이고자 의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어서, 자기 방어에 상황을 핑계로 공격자를 죽이려는 뜻을 품는 것이 금지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자기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공격자를 죽이고자 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뜻인지 분명하지 않다. 만일 토마스 아퀴나스가 전자의 의미로 기술한 것이라면 앞에서 살펴본 Jean P. Gury 이래의 정식화 항목 중에서 첫째 내지 둘째 항목을 통해 충분히 그 의미가 표현되고 있으며 별도로 셋째 항목을 제시할 수 있는 텍스트적 근거는 없다고 보게 될 것이다.<sup>15)</sup> 반면 그가 후자의 의미로 기술한 것이라면 선한 효과를 위해 필요한 어떤 조치가 해악적 효과도 수반할 경우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해악적 효과 자체를 의도해서는 안 됨은 물론 해악적 효과가 선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게 되므로 Jean P. Gury 이래의 정식화 항목 중에서 셋째 항목에 대한 텍스트적 근거를 이 개소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sup>16)</sup>

### Ⅲ. 해석적 논란의 배경

이중 효과 논증에 대한 전거로서 <신학대전>의 관련 개소를 살펴본 결과 확인하게 된 위의 두 가지 사실로부터 이하에서 상세히 검토하게 될 해석적 논란의 배경을 일견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사실 즉, 토마스 아퀴나스 자신의 견해를 놓고 생각할 때 이중 효과 논증은 그 자체 독자적인 원리로 생각

14) Christopher Kaczor, *op. cit.*, pp.301-2.

15) 이러한 해석적 견해를 취하고 있는 학자로는 Vicente M. Alonso, Alison McIntyre, Christopher Kaczor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각각 Joseph T. Mangan, *op. cit.*, p.45 이하; Alison McIntyre, *op. cit.*, sec.1; Christopher Kaczor, *op. cit.*, pp.298-300 참조.

16) 이러한 해석적 견해를 취하고 있는 학자로는 Joseph T. Mangan, Thomas A. Cavanaugh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각각 Joseph T. Mangan, *op. cit.*, pp.47-9; Thomas A. Cavanaugh, “Aquinas and the Historical Roots of Proportionalism”, *Aquinas Review* 1 (1995), p.34 참조.

되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방어적 살인이라는 특정한 실천적 문제에 답하고 있는 논증이라는 사실로부터 논증의 원리적 기반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원리적 기반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신학대전> 제2부 제1편에서 밝히고 있는 인간 행위의 선악 판단에 대한 원리이고, 둘째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살인과 같은 (비자발적) “거래를 규율하는 정의”<sup>17)</sup>로 기술하고 있는 교환적 정의(*iustitia commutativa*)의 덕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애초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정의의 덕에 대한 직접적인 고찰에 이어 그에 반하는 악에 대하여 고찰하는 중이었다. 그는 순차적으로 분배적 정의에 반하는 악<sup>18)</sup>과 교환적 정의에 반하는 악<sup>19)</sup>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데,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먼저 살인의 악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살인의 악에 대한 검토의 과정에서 과연 자기 방어적 살인도 일반적인 살인과 마찬가지로 교환적 정의에 반하는지를 숙고하기에 이르러 비로소 이중 효과 논증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거래를 규율하는 정의”는 이른바 비례적 호혜성의 구도를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호혜성에 관한 논의가 “정의에 있어서 중용(mean)을 이해하는 방식”에 관한 논의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종류의 특수적 정의가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중용’을 이루고 있음을 보이고, 이와 동시에 정의란 다름 아닌 산술적(arithmetical) 호혜성이라고 보는 피타고라스학파의 정의관은 특수적 정의가 중용을 이루는 방식들 중 어느 것보다도 부합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결국 피타고라스학파의 정의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피타고라스

17) *Sententia libri Ethicorum*, 967번 주석 참조.

18) *S.T.*, II-II, q.63.

19) *S.T.*, II-II, q.64~q.78.

학파의 호혜성을 “분배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 그 어느 것에도 들어맞지 않는다.”고 한 말의 의미이며, 이후의 논의는 산술적 호혜성이 아니라 비례적(analogous) 호혜성의 경우라면 그것이 본질적으로 “거래를 규율하는 정의”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는 작업이라는 것이다.<sup>20)</sup>

마찬가지로 교환적 정의의 덕을 원리적 기반으로 하는 자기 방어적 살인의 허용성 논증에서도 비례적 호혜성의 유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앞에서 인용한 개소에서 “어느 행위가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일 목적에 대한 비례를 벗어난다면, 금지될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문제는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비례적 호혜성의 구도를 교환적 정의 개념 속에 본질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경우 비례적 호혜성의 구도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곤란해진다는 점이다. 본래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환적 정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정적 정의 개념과 호혜성 개념의 융합을 통해 고안된 것인데,<sup>21)</sup> 시정적 정의는 “산술적” 평등을 지향하고,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의) 호혜성은 “비례적” 특성을 지니므로 이들 두 개념을 융합하여 만들어진 교환적 정의 개념이 내적 정합성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자기 방어적 살인의 허용성 논증에 등장하는 “목적에 대한 비례”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역시 곤란해지게 된다.

한편 자기 방어적 살인의 허용성 논증이 그 자체 하나의 도덕적 원리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리를 사례에 적용한 것이라고 하면, 논증을 통해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의 허용성이란 과연 어떠한 규범적 의의를 지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기 방어적 살인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허용되지 않는 해악적

20) 박준석,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환적 정의론』, 『목요철학』 제7호(계명대 논리윤리교육센터, 2010), 108-9면. (각주는 생략)

21)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박준석, 위의 글, 110면 이하 참조.

효과를 낳는 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외적으로 정당화된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공격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자체 혹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방위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의미인가?

다음으로 앞에서 두 번째로 확인했었던 사실 즉, 토마스 아퀴나스는 방위 행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선한 효과가 공격자를 죽게 하는 해악적 효과를 수단으로 하여 산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방위 행위를 하면서 타인을 죽이고자 의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그로 인해 일정한 해석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이미 살펴본 바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러한 언급이 해악적 효과를 수단으로 삼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인지 여부에 관한 견해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이 해석적 논란은, 간단히 말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심리과정론에 대한 견해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즉 의도(*intentio*)<sup>22)</sup>는 어디까지나 목적의 설정 단계에 관여하는 의지의 모습이며, 이와 구별하여 수단을 결정하는 단계에 관여하는 의지의 모습은 선택(*electio*)이라고 보는 입장<sup>23)</sup>을 취할 때 비로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해악적 효과를 수단으로 삼는 것을 금지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게 되는 것이다.

22) *Intentio*는 학자들에 따라서 “지향”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의도”로 번역되기도 한다. 전자의 예로는 이재경, 『아랍철학자 아비첸나와 지향성이론』, 『서양고전학연구』 제23집(한국서양고전학회, 2005), 183-4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정승현 역, 『진리의 광채』(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86면 또는 93면 및 97면 등; 박승찬, 『유비 개념의 다양한 분류에 대한 비판적 성찰 -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카에타누스의 해석을 중심으로』, 『중세철학』 제11집(한국중세철학회, 2005), 129-32면을 참조. 후자의 예로는 서병창, 『신학대전』에 나타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의지 개념, 『철학과 현상학연구』 제34집(한국현상학회, 2007), 90면; 채이병, 『정의로운 전쟁은 어떻게 가능한가? -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중세철학』 제9집(한국중세철학회, 2003), 56면; 유지황, 『인식과 자유 선택: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성과 의지 관계 이해』, 『한국교회사학회지』 제17권(한국교회사학회, 2005), 151면을 참조.

23) 이에 대해서는 John Finnis, *op. cit.*, pp.152-4 참조.

## IV. 해석적 쟁점: 의도, 비례, 허용

### 1. “의도”의 개념

이상의 논의를 배경으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중 효과 논증에 관한 해석적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의도(*intentio*) 개념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도와 선택의 대상을 엄격히 분리하여 전자는 목적을 그리고 후자는 수단을 각각 그 대상으로 한다고 보는 견해가 논란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한 견해는 <대(對)이교도대전(*Summa contra Gentiles*)><sup>24)</sup>에 나타난 토마스 아퀴나스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악이 행위자의 의도와 분리된 어떤 것들에서 생긴다는 것은 명백하다.<sup>25)</sup>

비록 악이 의도와 분리되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발적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 본질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연적으로 그러한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왜냐하면 의도는 궁극적 목적(*ultimate end*), 즉 사람이 그 자체로서 의욕하는 바를 향하게 되지만, 의지는 사람이 그 자체로서는 의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는 의욕하는 바를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6)</sup>

이에 따르면 일견 행위의 해악적 효과는 적어도 의도가 아닌 다른 의지의 활

24) 이하 <대(對)이교도대전> 또는 S&G로 줄여 쓰기로 한다. <대(對)이교도대전>의 영문 번역으로는 Anton C. Pegis, James F. Anderson, Vernon J. Bourke, Charles J. O’Neil, *On the Truth of the Catholic Faith: Summa contra Gentiles* (New York: Hanover House, 1955-57)를 따랐다. 이 영문 번역의 최신판은 아래의 주소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다(<http://josephkenny.joyeurs.com/>).

25) S&G, Book III, c.4

26) S&G, Book III, c.6

동과 관련이 있으며, 그 다른 의지의 활동이란 본유적 가치를 지니는 궁극적 목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구적 가치를 지니는 대상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방위 행위를 하면서 타인을 죽이고자 의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해악적 효과를 수단으로 삼는 심적 활동의 금지와는 무관한 것이 된다.

하지만 Joseph T. Mangan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對)이교도대전>의 표현과 나중에 쓰인 <신학대전>의 표현이 상이할 경우 그간의 이론적 발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자를 기준으로 후자를 해석하는 것이 항상 적절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sup>27)</sup> 그가 주목하고 있는 표현상의 차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신학대전>의 한 개소에서 “의지의 운동이 수단을 대상으로 할 때 이것을 선택이라 하고, 의지의 운동이 수단을 통해 달성되는 목적을 대상으로 할 때 이것을 의도라 한다.”<sup>28)</sup>고 말하는 것과 달리, 앞에서 인용한 <대(對)이교도대전>의 개소에서는 의도를 목적 일반이 아니라 오로지 궁극적 목적(ultimate end)의 설정에만 결부시키고 있다. 그런데 목적 일반은 궁극적 목적과는 달리 수단을 배제하는 개념이 아니다.

John Finnis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Metaphysics)>과 <자연학(Physics)> 등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석을 통해서 볼 때 그가 수단의 선택을 그 자체 하나의 목적 설정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의 행위에 대응하는 내면의 심리과정에서 목적은 가까운 목적(proximate end)과 먼 목적(remote end)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수단의 선택은 다름 아닌 가까운 목적의 설정이라는 것이다.<sup>29)</sup> 따라서 목적을 궁극적 목적이라 새김으로써 목적과 수단을 엄별하고, (궁극적) 목적을 대상으로 하는 심적 활동으로서의 의도와 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심적 활동으로서의 선택을 엄격히 구분하여 설명하는 신-스콜라주

27) Joseph T. Mangan, *op. cit.*, p.47

28) *S.T.*, I-II, q.12, a.4

29) John Finnis, *op. cit.*, p.159

의의(neo-scholastic) 도식적 해석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심리과정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일 Joseph T. Mangan과 John Finnis의 지적이 옳다면 이중 효과 논증에 관한 토마스 아퀴나스 자신의 진술 속에서 해악적 효과가 선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제를 발견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명제를 그로부터 추론해 낼 수는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하여 토마스 아퀴나스 자신의 견해가 Jean P. Gury 이래의 정식화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보게 될 것이다.

## 2. “목적에 대한 비례”의 의미

다음으로 이중 효과 논증에 등장하는 “목적에 대한 비례(*proportionatus fini*)”의 의미와 관련한 해석적 논란을 살펴보기로 하자. Christopher Kaczor에 따르면 “비례”의 의미는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를 어디까지나 행위 또는 수단과 목적 사이의 비례(*act/end proportion*)라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점차 선한 효과와 해악적 효과 사이의 비례(*effect/effect proportion*)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Peter Knauer의 비례주의(*proportionalism*)<sup>30)</sup>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sup>31)</sup>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 방어적 살인의 허용성 논증에 등장하는 “목적에 대한 비례”의 개념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환적 정의 개념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이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준다. 첫째, 자기 방어적 살인의 허용성 논증이 교환적 정의의 덕을 그

30) *Veritatis Splendor* (『진리의 광채』)의 한국어판에서는 *proportionalism*을 “비교주의”로 번역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정승현 역, 『진리의 광채』(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95면 참조.

31) Christopher Kaczor, *op. cit.*, pp.310-3 참조 여기서 그가 사용하고 있는 *act/end proportion* 개념과 *effect/effect proportion* 개념은 Brian Johnstone의 개념들을 차용한 것이다.

원리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둘째,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교환적 정의의 개념 속에는 비례적 호혜성의 구도가 본질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는 점. 셋째, 자기 방어적 살인이 허용되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 중 하나가 “목적에 대한 비례”의 유지라는 점. 이러한 문맥에서 볼 때 아퀴나스가 말하는 “목적에 대한 비례”는 일단 침해 내지 공격에 직면하여 “(비례적) 호혜성의 기준에 따라” 침해 내지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과도하지 않은 방어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약 조건이라 말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이 교환적 정의의 개념의 문맥에서 “목적에 대한 비례”를 이해하고자 할 경우, 그 핵심에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의) 호혜성의 “비례적” 성격과 시정적 정의의 “산술적” 성격을 교환적 정의라는 하나의 개념 속에서 양립시켜야 하는 곤란한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sup>32)</sup> 생각건대 이러한 근본적인 딜레마가 해소되지 않은 까닭에 “목적에 대한 비례”의 의미를 둘러싼 해석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eter Knauer는 “목적에 대한 비례”의 개념 속에 이중 효과 논증의 심리적 제약 조건과 물리적 제약 조건이 통합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행위의 내적-심리적 측면에서의 평가와 외적-물리적 측면에서의 평가를 따로따로 진행함으로써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로지 양자가 통합된 하나의 객관적-목적적 관계(the objective relation)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뿐이기 때문이다.<sup>33)</sup> 그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해된 “목적에 대한

32) 박준석, 앞의 글, 114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호혜성 개념과 시정적 정의의 개념에 대한 성찰로 되돌아가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전자가 가지고 있는 “거래의 수행 기준”으로서의 성격과 후자가 가지고 있는 “분쟁의 사후적 처리 기준”으로서의 성격에 착안하여 그 양립가능성의 문제를 다루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박준석, 앞의 글, 114-5면; 박준석, 『아리스토텔레스의 호혜성에 대하여』, 『법사학연구』 제41호(한국법사학회, 2010), 285-7면 참조.

33) Peter Knauer, “The Hermeneutic Function of 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Natural Law Forum* 12(1967), p.136.

비례”의 개념을 “비례적 근거(commensurate reason)”라는 말로 표현한다. 요컨대 그는 이중 효과 논증에 대한 기존의 정식화를 다음과 같은 하나의 명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한다.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유발하는 해악적 효과가 그 자체로서 의도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수반된 것으로서 비례적 근거에 의해 정당화될 경우에만 그것을 허용할 수 있다(One may permit the evil effect of his act only if this is not intended in itself but is indirect and justified by a commensurate reason).<sup>34)</sup>

Peter Knauer 자신은 이러한 해석이 신-스콜라주의적 해석론을 거두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취지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sup>35)</sup> 예컨대 첫째, 토마스 아퀴나스는 선한 의도로 행한 행위일지라도 “목적에 대한 비례”의 한계를 벗어날 경우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지만, Peter Knauer는 어떤 행위가 그것의 총체적인 존재의 지평 안에서(in its total existential entirety) 비례적 근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그 행위의 해악적 효과는 곧 객관적으로 의도된 것이라고 봄으로써 과도한 해악을 항상 의도적 해악과 동일시한다.<sup>36)</sup> 따라서 의도치 않은(*praeter intentionem*) 해악도, 그것이 과도한 해악이라면, 우연적으로(*per accidens*) 의도된 해악으로 돌변하게 된다.<sup>37)</sup> 둘째, 토마스 아퀴나스는 “목적에 대한 비례”의 요구를 통해 행위자의 숙고(*deliberation*)와 그에 따른 (수단의) 선택이라는 심적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했지만, Peter Knauer는 “비례적 근거”의 요구를 통해 행위의 선한 효과와 해악적 효과 사이의 객관적 형량을 시도하고 있을 뿐이다.<sup>38)</sup>

34) *Ibid.*, p.136.

35) Christopher Kaczor, *op. cit.*, pp.306-14; Thomas A. Cavanaugh, *op. cit.*, pp.36-42.

36) Thomas A. Cavanaugh, *op. cit.*, p.38.

37) *Ibid.*, p.39.

### 3. “허용”의 의미

마지막으로 자기 방어적 살인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licet*)는 말의 의미에 대한 해석적 논란을 살펴보면, 대체로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견해에 따르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중 효과 논증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기 방어적 살인은 비록 사망의 결과를 행위자가 예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의도한 것이 아니며, “목적에 대한 비례”를 유지하고 있는 폭력의 사용은 정상적인 거래 수행의 기준을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공격자의 사망을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이에 따르면 이중 효과 논증은 일견 귀속(imputability)의 기준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sup>39)</sup>

한편 공격자의 사망을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형법) 도그마틱적 관점에서 볼 때 첫째, 사망의 결과 자체를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의미일 가능성. 둘째, 사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의미일 가능성. 셋째, 행위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일 가능성 등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40)</sup> 그렇지만 이와 같은 불분명함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대에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었을 수 있다. 따라서 “귀속”이라는 개념의 불분명함 자체가 위와 같은 해석론이 부적절한 것임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다른 견해에 의하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중 효과 논증은 일종의 정당화(justification)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다. Joseph M. Boyle에 따르면 첫째, 단순히 발

38) *Ibid.*, pp.41-2.

39) Joseph M. Boyle, “Toward Understanding 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Ethics* 90(1980), p.529; Christopher Kaczor, *op. cit.*, p.307 n.43. 이에 따르면 신-스콜라주의의 입장이 바로 그러한 예라고 한다.

40) 귀속론의 다양한 형태와 그것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김성룡, 『객관적 귀속이론의 발전사 - 의사(Wille)의 귀속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제42호(한국법사학회, 2010), 119면 이하 참조. 다만 이 글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소개한 후 곧바로 푸펜도르프의 이론으로 넘어가고 있다.

생한 결과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구별하고 있는 해악적 효과를 수단으로 (의도)하여 선한 효과를 산출하는 경우와 해악적 효과가 선한 효과를 산출하는 와중에 단지 예견되었을 뿐인 경우 모두 발생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sup>41)</sup> 그러한 관점에서의 접근은 적절치 않으며 둘째,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의도는 단지 어떤 행위를 진행시키는 심리과정의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규정하는 성격(act-defining character)을 지니므로, 어떤 행위가 이중 효과 논증의 테스트를 통과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은 그 행위가 윤리적으로 악하지 않다는, 즉 정당한 행위라는 점을 확정하기 때문에 이중 효과 논증은 정당화적 기준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42)</sup>

생각건대, 이중 효과 논증을 귀속의 기준으로 이해할 경우 도그마틱적 관점에서 그 의미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유사하게, 귀속의 기준과 정당화의 기준을 구별하는 태도 또한 오늘날의 도그마틱적 관점을 전제할 때에나 취할 수 있는 것일지 모른다. 따라서 이 부분의 해석적 논란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텍스트 내에서 해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며, 도그마틱에 관한 별도의 이론사적 연구를 통한 추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 V. 나가며

이상으로 이 글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중 효과 논증을 보여주고 있는 <신학대전>의 개소를 살펴봄으로써 이 주제에 관한 토마스 아퀴나스 자신의

41) 귀속의 의미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42) Joseph M. Boyle, *op. cit.*, pp.529-31.

진술을 확인하고, 당해 개소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에 관하여 그러한 의문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검토한 뒤, 그와 같은 쟁점 사항들을 둘러싼 해석적 논쟁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중 효과 논증을 다양한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정식화된 논증의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기보다는 정당방위라는 특정한 실천적 문제에 대한 숙고의 결과를 기술하고 있으며, 또한 방위 행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선한 효과가 공격자를 죽게 하는 해악적 효과를 수단으로 하여 산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중 효과 논증의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도(*intentio*)” 개념, “목적에 대한 비례(*proportionatus fini*)” 개념, 그리고 자기 방어적 살인이 “허용된다(*licet*)”는 말의 의미 등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쟁의 지점을 검토한 이 글의 작업은 이 분야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법학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미진한 것이지만 향후의 본격적인 연구와 논의를 위한 계기를 제공하는 데서 약간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작

*Summa Theologiae*, trans. by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The Summa Theologiae of St.*

*Thomas Aquinas*, New York: Benziger Bros., 1947.

*Summa contra Gentiles*, trans. by Anton C. Pegis et al, *On the Truth of the Catholic Faith: Summa contra Gentiles*, New York: Hanover House, 1955-57.

*Sententia libri Ethicorum*, trans. by Litzinger, C.I., O.P., *Commentary on the Nicomachean Ethics*,

Chicago: Henry Regnery Company, 1964.

▪ 기타 문헌

Boyle, Joseph M. "Toward Understanding 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Ethics* 90, 1980.

Cavanaugh, Thomas A. "Aquinas and the Historical Roots of Proportionalism", *Aquinas Review* 1, 1995.

Delany, Joseph, "Accomplice", *The Catholic Encyclopedia: Vol. 1*, New York: Robert Appleton Company, 1907 (URL = <<http://www.newadvent.org/cathen/01100a.htm>>).

Finnis, John, *Intention & Identity Collected Essays: Volume I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Ioannes Paulus PP. II, *Veritatis Splendor*,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93(정승현 역, 『진리의 광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Kaczor, Christopher, "Double-Effect Reasoning from Jean Pierre Gury to Peter Knauer", *Theological Studies* 59, 1998.

Knauer, Peter, "The Hermeneutic Function of 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Natural Law Forum* 12, 1967.

Mangan, Joseph T. "An Historical Analysis of 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Theological Studies* 10, 1949.

McIntyre, Alison, "Doctrine of Double Effect",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Fall 2009 Edition), E.N. Zalta (ed.), URL = <<http://plato.stanford.edu/archives/fall2009/entries/double-effect/>>.

Quinn, Warren S. "Actions, Intentions, and Consequences: The Doctrine of Double Effect", *Philosophy & Public Affairs* 18-4, 1989.

Um, Sung-Woo, "Intending as a Means and Foreseeing with Certainty", 『철학사상』 제34권,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009.

김성룡, 『객관적 귀속이론의 발전사 - 의사(Wille)의 귀속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제42호, 한국법사학회, 2010.

박승찬, 『유비 개념의 다양한 분류에 대한 비판적 성찰 -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카에타누스의 해석을 중심으로』, 『중세철학』 제11집, 한국중세철학회, 2005.

박준석,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환적 정의론』, 『목요철학』 제7호, 계명대 논리윤리교육센

터, 2010.

- \_\_\_\_\_, 『아리스토텔레스의 호혜성에 대하여』, 『법사학연구』 제41호, 한국법사학회, 2010.
- 서병창, 『『신학대전』에 나타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의지 개념』, 『철학과 현상학연구』 제34집, 한국현상학회, 2007.
- 유지황, 『인식과 자유 선택: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성과 의지 관계 이해』, 『한국교회사학회지』 제17권, 한국교회사학회, 2005.
- 이재경, 『아랍철학자 아비첸나와 지향성이론』, 『서양고전학연구』 제23집, 한국서양고전학회, 2005.
- 채이병, 『정의로운 전쟁은 어떻게 가능한가? -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중세철학』 제9집, 한국중세철학회, 2003.

<Abstract>

## On Aquinian Double Effect Reasoning

Park, Joon-Seok\*

St. Thomas Aquinas employs the so-called “double effect reasoning” at the second part of the second part of *Summa Theologiae*. It is known that he explicitly delivered 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for the first time, but there has been different versions of interpretation on the exact meaning of the text.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examine various versions of interpretation since double effect reasoning suggests theoretical as well as practical frame of thought against many problems in the fields of theology, law and bioethics.

This paper examines mainly three of the key concepts in the text, of which the first is the concept of “intention (*intentio*)”, the second to be “proportionate to the end (*proportionatus fini*)”, and the third “to be permitted (*licet*).”

Debate concerning the concept of “intention” must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theory of the Aquinian process of decision-making, while debate concerning the meaning of the words “proportionate to the end” relates to the estimation of modern proportionalism, and while debate concerning the meaning of the words “to be permitted” relates to the modern dogmatic theory of law.

This paper tries to understand the text from the view point of Thomas Aquinas himself and contribute to the continued study and discussion of the legal thoughts of

---

\* Assistant Professor in Law, Chonbuk National University (bookofchange@daum.net)

him and his great works.

**[Key Words]** Thomas Aquinas, double effect reasoning, intention, choice, proportionate to the end, self-defense, commensurate reason

접수일 : 2012. 2. 29., 심사일 : 2012. 3. 12.~4. 6., 게재확정일 : 2012. 4. 6.